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62

발의연월일: 2022. 10. 27.

발 의 자 : 허 영·최인호·이개호

김두관 · 김수흥 · 김병욱

장철민 · 김민철 · 박상혁

천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궤도사업의 허가, 준공검사, 안전검사, 자체 안전관리, 사고시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노후 케이블카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스키장리프트 운행 중 역주행 사고, 모노레일 전복사고 등 잦은 운행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10년 이상 노후설비 및 차량 등 주요부품 교체 시 안전성 확인절차 부재, 허가·검사·탑승정보 및 운송사고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의 부재 등 안전관리체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주요설비 교치 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궤도운송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별하며, 중대한 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국토교통부에도 보고하도록 함.

또한, 설비정보, 사고정보와 점검결과 등 궤도시설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두도록 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궤도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의2 신설, 제32조).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운행장애"란 궤도운송사고 외에 기계의 결함·고장 또는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궤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임시검사"를 "수시검사 또는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또는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를"을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임시검사"를 "수시검사 또는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또는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를"을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등을"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또는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가. 궤도의 차량을 교체한 경우
 - 나. 궤도의 제어반(制御盤), 제동장치 또는 구동장치를 교체한 경우
 - 다. 와이어로프 접합부를 다시 연결하거나 위치를 변경한 경우 또는 와이어로프를 교체한 경우
 - 라.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 마.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전용궤도는 제외한다.
 -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이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다. 그 밖에 궤도의 성능저하로 궤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 가 있어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

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 사의 유효기간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궤도운송사고"를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궤도운송사고를"을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등을"로 한다.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궤도 업무의 전산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궤도사업자·전용궤도운영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제2항제5호 중 "임시검사"를 "수시검사 또는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또는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궤도시설의 임시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은 궤도시설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궤도시설의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9 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궤 도시설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준공검사일로부터 3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

터 1년 이내

- 2. 준공검사일로부터 2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 3. 준공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2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 4. 준공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
- 5.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u> 2의2. "운행장애"란 궤도운송
	사고 외에 기계의 결함·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궤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14. (생 략)	13.・14. (현행과 같음)
제12조(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①	제12조(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	
시장・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	
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	
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	
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	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8. (생략)
- 9.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u>임</u> <u>시검사</u>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 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 를 운영한 경우
- 10.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 11. ~ 13. (생략)
- 1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25조제1항에 따른 <u>중대한 궤</u> <u>도운송사고를</u> 일으킨 경우 15. ~ 16. (생 략)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 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 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 8. (현행과 같음)
9 <u>仝</u>
시검사 또는 제3호(나목은 제
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10
정기검사 또는 제3호나목
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11. ~ 13. (현행과 같음)
14
중대한 궤
도운송사고 등을
15. ~ 16. (현행과 같음)
②

- 1. · 2. (생략)
- 3.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제도를 운영한 경우
- 4.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u>정기검사</u>를 받지 아니하 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 5. ~ 7. (생략)
-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를 일으킨 경우
- 9. ~ 10. (생략)
- ③ (생략)
- 제19조(안전검사) ① 궤도사업자 전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해당 궤 도시설에 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 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 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생략)
 - 2. 임시검사: 운행 중에 궤도운2. 수시검사:송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나에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시하는 검사

1. • 2. (현행과 같음)
3
시검사 또는 제3호(나목은 제
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4
정기검사 또는 제3호나
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5. ~ 7. (현행과 같음)
8
중대한 궤도
운송사고 등을
9.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안전검사) ①
1. (현행과 같음)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
의기가 에 이어도 76가게 크게

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 시장·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검사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u>가.</u> 궤도의 차량을 교체한 경 우
- 나. 궤도의 제어반(制御盤),제동장치 또는 구동장치를교체한 경우
- 다. 와이어로프 접합부를 다시 연결하거나 위치를 변경한 경우 또는 와이어로프를 교체한 경우
- 라.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 마.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궤 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
-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다만,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전 용궤도는 제외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②·③ (생 략)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 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 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 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 장・광역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 나.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이 경우 정밀안 전검사를 받고 5년마다 정 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다. 그 밖에 궤도의 성능저하 로 궤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 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 ③ (현행과 같음)
- 4 -----

호에 따른 <u>정기검사</u>를 받지 아 ----- <u>정기검사 또는 제3</u> 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 <u>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u>--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 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⑤ (생략)

제25조(궤도운송사고 등의 보고 제25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등의 및 조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부상자가 발 생한 경우, 운송 중 기계의 결함 •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 유로 사람을 태운 채 궤도의 운 행이 중단된 경우 등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궤도운송사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밀안전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 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연 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정밀안 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 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보고 및 조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 운송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중 대한 궤도운송사고 등"이라 한 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 시장 · 광역시장 및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장・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궤도운송사고를 조사할 수 있 시 사고 등을-----. 다.

<신 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 시장・광역시장 및 국토교통부 <u>장관</u>----- <u>중대한</u> 궤도운송

- 제26조의2(궤도 업무의 전산 처 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궤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 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 축 ·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 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 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 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궤도사업자·전

제32조(벌칙)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4. (생략)
- 5.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u>임</u>시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자
- 6.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 7. ~ 9. (생략)

용궤도운영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
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데3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F
5 <u>수</u>
5 <u>수</u> 시검사 또는 제3호(나목은 제
<u> </u>
시검사 또는 제3호(나목은 제
시검사 또는 제3호(나목은 제
시검사 또는 제3호(나목은 제 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시검사 또는 제3호(나목은 제 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시검사 또는 제3호(나목은 제 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6

7. ~ 9. (현행과 같음)